

수원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006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오민주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2021. 3.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21년 제142호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44,675,30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4,675,3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7. 11. 1. 자신 소유의 시흥시 D 답 4,962㎡ 중 1/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07. 11. 2. E조합에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B에게 대여하였다.

나. E조합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9.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고, E조합은 그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0. 8. 6. 원금 60,000,000원, 이자 15,415,299원 합계 75,415,299원을 배당받았다.

다. 피고와 B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은 2009. 11. 10. 증서 2009년 제90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서 B은 피고에게 대여금 80,000,000원(이자 0%)을 2009. 11. 13. 변제할 것을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이후부터 2010. 7. 27.경까지 B에게서 5,000,000원을 변제받았고, 피고와 B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F이 2010. 7. 27. 원금 75,000,000원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2. 12.부터 2020. 9. 15.까지 B에게서 19,777,968원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0. 7. 자 2020타채1546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채권자 피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의료법인 G, 압류 및 전부할 채권 B이 의료법인 G에게서 매월 지급받는 급여 중 압류 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기초하여 의료법인 G에서 2020. 10. 15.부터 2021. 1. 15.까지 13,057,702원을 변제받았다.

마. 피고와 B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C는 2021. 3. 24.경 증서 2021년 제142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서 B은 피고에게 대여금 120,000,000원을 2021. 4. 12.까지 지급할 것(지연손해금 연

24%)을 정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4. 20. 자 2021타채1280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채권자 피고, 채무자 B, 제3채무자 의료법인 H, 압류 및 전부할 채권 B이 의료법인 H에게서 매월 지급받은 급여 중 압류 금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의료법인 H에서 2021. 5. 3.부터 2022. 6. 2.까지 합계 64,300,000원을 변제받았다.

사. 원고가 B을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19. 9. 19. B은 원고에게 620,659,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추심금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추심금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5, 6, 7, 9, 11 내지 14호증, 을 제1, 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B에 대한 2010. 8. 6. 기준 구상금채권액은 70,415,000원(E조합이 배당받은 75,415,299원에서 피고가 B에게서 2010. 7. 27. 이전 변제받은 5,000,000원을 제외한 돈, 천원 미만은 버린 것으로 보인다)이고 그 이후 연 5%의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2021. 1. 15.까지 위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07,194,780원(= 원금 70,415,000원 + 이자 36,779,780원)이다. 피고는 2021. 1. 15.까지 위 구상금채권 중 32,835,670원(위 기초 사실에서 본, 피고가 B에게서 변제받은 19,777,968원과 의료법인 G에서 변제받은 13,057,702원의 합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2021. 1. 15. 기준 위 구상금채권의 잔액은 74,359,110원(원금 70,415,000원, 이자 3,944,110원)이고,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작성일인 2021. 4. 24.(2021. 3. 24.의 오기로 보이나 아래와 같이 이자도 2021. 4. 24.까지 계산하였으므로 정정하지 아니한다) 기준 위 구상금채권의 잔액은 75,324,699원(= 원금 70,415,000원 + 2021. 1. 15. 기준 이자 3,944,110원 + 2021. 1. 16.부터 2021. 4. 24.까지의 이자 964,589원)이다.

그런데 피고와 B은 2021. 3. 24.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여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중 위

구상금채권의 잔액을 초과하는 44,675,301원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초하여 64,3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로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4,675,3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위 기초 사실에서 본, 피고의 B에 대한 2007. 11. 2. 자 대여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는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월 2%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기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조합에서 60,000,000원을 대출받은 점,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대여 원금을 80,000,000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는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부터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일인 2009. 11. 1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20,000,000원(60,000,000원에 대한 2007. 11. 2.부터 2009. 11. 10.까지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19,436,712원이다)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액에 포함하는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이자를 0%로 기재한 것은 피고와 B이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대여 원금으로 기재하여 위 80,000,000원에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당시까지 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인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와 B은 위 60,000,000원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적어도 연 16%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공정증서가 대여 원금을 허위로 기재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2008. 12. 8.까지 피고의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였고 피고는 E조합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이자를 0%로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자 약정이 없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하는 점, 앞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에 이자를 0%로 기재한 것은 피고와 B이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을 대여 원금으로 기재하여 위 80,000,000원에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당시까지 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기초 사실 및 위에서 인정한 연 16%의 이자 약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이후부터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작성 당시까지의 60,000,000원에 대한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가 109,124,383원이고 여기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공정증서 작성 이후부터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작성 당시까지 변제받은 37,835,670원(= 5,000,000원 + 19,777,968원 + 13,057,702원)을 제하더라도 71,288,713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원금 60,000,000원, 이자 잔액 71,288,713원 합계 131,288,713원임을 알 수 있다.

라.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대여금이 120,000,000원으로 기재되었음은 앞서 인정하였고, 위 120,000,000원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작성 당시까지의 원리금 합계인 131,288,713원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초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B의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제2 공정증서에 기초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엽